

계절수업 운영 규정 [제목개정 2016.12.23.]

제정 1998. 3. 1. 개정 1999. 6. 1.
개정 2000. 9. 1. 개정 2001. 9. 1.
전문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4. 3. 1. 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학생 중 학점 미취득자가 하계·동계 방학을 적극 활용하여, 재수강에 의한 학점 취득과 기타 전문 분야 능력개발을 위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2조(개설시기) 계절수업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며 이는 정규학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수업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3조(수업시간) 계절수업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강의시작 일로부터 3주 이내에 모든 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4조(개설교과목) 계절수업 개설교과목은 해당년도 1학기, 2학기에 개설되는 전체 교과목으로 한다. 단,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10인 이하일지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, 2016.12.23>

제5조(수강학점) 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 시까지 총 18학점까지 취득, 인정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6조(수강대상) ① 계절수업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② 계절수업 수강신청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서 재수강자, 졸업학점 미달자, 선 수강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③ 복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학기의 직전학기에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조기 복학신청을 하여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④ 기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.

제7조(수강료 및 강사료) 계절수업 수강료 및 강사료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8조(수강신청 및 등록) ① 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무처에 신청학점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학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6.12.23.>

제9조(수업 및 시험) 계절 수업은 정규학기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, 시험은 수업 마지막 요일에 실시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10조(성적평가 및 처리) ① 계절수업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같다. <개정 2016.12.23.>

② 계절수업에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와는 구분하여 별도 처리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③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 사정 시 졸업소요학점으로만 합산정리 한다. <개정

2016.12.23.>

④ 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2.23.>

⑤ 삭제 <2013.7.1.>

제11조(예산운영) 계절수업 납입금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담당하여 강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강의수당 및 관리요원 수당, 기타 교직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